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12.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9년 11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68회(정기회) 제12차 위원회(1999년 12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가. 제안이유

-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영등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영등포구 환경보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사업자 및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영등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언론 등의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 및 환경조사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본 조례 제정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여 장별로 보고를 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법제상 또는 제정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1조에서 4조까지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경보전을 하기 위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영등포구의 책무로 규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자(사업자)와 제조·가공·판매·처리 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 연구와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및 구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살고 있는 구민은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구민의 책무와 권리규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보전을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수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 구민적 추진사업으로 환경오염의 감시와 신고 등을 생활화하여 학교에서 학생에게, 언론에서는 홍보를 펼쳐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며,

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 안 제10조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보전의 방향 설정이나 대기수질, 소음방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는 물론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나 주요계획의 변경을 할 경우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자연환경은 생태계 보전이 우리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의 질서가 우리 생활의 정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자연이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되므로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인간이 살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연생태계 보전과 환경보전에 모든 구민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3장 환경보전시책 등은 환경의 설치나 관리는 환경의 주범인 폐기물 무단방류와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구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매연 등 폐기물의 감량이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기술·정보 등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원인행위에 대한 규제조치는 물론 감시, 측정을 면밀히 하여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 수시 감시 조치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는 제20조에서부터 26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정보시책의 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므로 주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한 규정과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홍보를 촉진하여 환경의 조사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므로 구민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환경현황과 개선 그리고 주민의 홍보와 참여 등 추진사항 등에 대한 결과를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많은 이들에 널리 알리고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분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경오염에서 최소의 피해로 구제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하는데 노력한다는 전문 26조로서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의 극심한 파괴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구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온 인류가 다함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은 물론 대기오염 발생을 줄여 체적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안에서 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환경 보전을 위한 짜임새 있는 계획과 추진 그리고 관리와 처리(행정, 사업자) 주민의 참여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시의적절한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환경의 주범은 자연현상이라기 보다는 우리(인간) 자신들의 생활양식이 환경을 파괴하여 그 영향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는 누구의 잘못만이 아닌 행정, 사업자, 주민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96
------------------	----

제출년월일 : 1999. 11.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영등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영등포구 환경보전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여 구민의 환경요구에 부응하고자 구·사업자 및 구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영등포구민이 건강하고 체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나.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고자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 학교·언론 등의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 다.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고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 및 환경조사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환경영책기본법 제3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라.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폐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폐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폐적한 생활에 기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폐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계획 등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수질·토양보전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해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해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보전시책 등

제13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관련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조치) ①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구는 환경보전상의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감시, 측정 등) ①구청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한 환경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20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정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구민 참여 등)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민간환경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환경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구민·구민단체 등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5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직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